



'09년 개정 지방세법령 해설

전 동 훈

행정안전부 서기관

I. 의 의

최근 경기침체 및 신용경색으로 인한 서민생활 및 기업활동을 지원하고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09년도 지방세법 개정방향을 마련하였다.

첫째, 서민생활 안정을 위하여 서민용 경형 승합차량에 대하여 면제토록 확대하고, 유류에너지 관련 지방세 지원을 위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하여 감면토록 신설하였으며 관광산업에 대한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외국인 전용 관광호텔에 대하여 재산세를 감면토록 하였다.

둘째, 지방세의 공평과세기반을 구축하고 나아가 납세자의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상속 등으로 취득하는 고급주택이나 고급오락장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대상의 용도변경 유예기간을 30일에서 6개월로 연장 조정하였고 그 동안 품목별 면허에 대한 정기분 면허세를 과세하였으나 정기분 면허세를 면제하도록 하였으며 시도간 차량을 이전하는 경우 자동차세 납세증명서 제시 규정을 개선하였다.

셋째, 세원 투명성 확보 및 지방세 운영 업무의 효율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납세고지서 등 서류를 송달하는 경우 등기우편으로 송달하는 규정을 개선하여 일반우편 등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방법으로 송달하도록 지방세 송달제도를 개선하고 고액·상습 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는 방법을 자치단체의 공보를 통하여 공개토록 그 범위를 확대하였으며 주택조합 등이 일반분양분 부동산을 분양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하도록 개선하였다.

넷째, 지방세 체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기 위하여 재산세 세부담 상한제를 적용하기 위한 개별공시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시장군수가 산정하는 가격을 공시가격에 보완하도록 하였고, 담배소비세를 불법반출 등으로 추징하는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고급주택에 대한 과표적용 기준을 취득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중과세 적용토록 하였다.

II. 분야별 주요내용

1. 총칙

(1) 지방세 서류의 송달방법 (법 제51조의2)

현 행	개 정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제51조의 규정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등기우편 또는 전자송달에 의한 다. 다만, 이 법에 의하여 과세기준일과 납기가 정하여져 매년 부과지하는 지방세로서 납세고지서 1매당 합계세액이 3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송달할 수 있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등기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교부·등기우편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방법에 따라 송달할 수 있다.	제51조의2(서류송달의 방법) ① 제51조에 따른 서류의 송달은 교부·우편 또는 전자송달로 하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에 따른다. ④제1항의 규정에 따라 납세고지서, 납입통지서, 독촉장 또는 최고서를 우편으로 송달한 경우에 그 서류가 납기한이 경과한 후에 도달되거나 도달한 날부터 7일 이내에 납기한이 도달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송달을 받은 날부터 14일을 경과한 날을 납기한으로 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지방세정보통신망의 장애로 전자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교부 또는 우편의 방법으로 송달할 수 있다.

<개정사유>

우편송달을 등기우편에서 우편으로 변경하고, 도·농지역, 아파트·단독주택 등 다양한 지역 특성에 따라 자치단체장이 판단하여 구체적인 송달방법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 것이나 송달에 대한 입증방법이 과세권자에서 납세의무자로 전환되는 것이 아니므로 납세고지서 송달에 따른 입증책임은 과세권자에게 부담되는 것이다.

<적용례>

납세고지서 등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한 경과조치로서 동법 제51조의2제1항·제4항 및 제6항의 개정규정은 서류송달의 방법에 관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개정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부칙 제5조)

(2) 고액체납자 명단 공개방법(법 제69조의2)

현 행	개 정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개는 관보 및 공보 게재, 지방자치단체 정보통신망 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에 의한다.

<개정사유>

관보이외에 주민이 자주 접할 수 있는 자치단체 홍보용 시보·군보 등 공보게재(월 1~5회 발간) 추가하여 공시토록 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례>

시행일 :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2. 취득세

(1) 일반분양분 주택조합용 부동산의 납세의무자 (법 제105조)

현 행	개 정
⑩「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단서 신설>	⑩「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하 이 절에서 “주택조합등”이라 한다)이 당해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것으로 본다. 다만,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이하 이 절에서 “비조합원용 부동산”이라 한다)은 제외한다.

<개정사유>

주택조합(주택재건축조합)이 조합원으로 부터 토지를 신탁받아 사업 완료후, 조합원에게 환원되지 않는 조합원이외 부동산(예 : 상가, 비회원 분양분)에 대한 취득세를 주택조합 등에 부과할 수 있도록 개정한 것이다.

상가 등은 주택조합의 공사비 충당 등에 필요한 수익사업으로 그간 법령해석 등으로 주택조합에게 취득세를 부과하였으나, 최근 대법원 판례 등에서 주택조합 등이 일반분양분 토지에 대하여 과세하는 것은 입법미비라는 점에서 취소하였는바, 이를 과세하도록 보완한 것이다.

<적용례>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 일반분양용 주택조합용 부동산의 신탁시 비과세 적용 배제(법 제110조)

현 행	개 정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주택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택조합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주택재건축조합과 조합원간의 신탁재산 취득을 제외한다.	1. 신탁(「신탁법」에 의한 신탁으로서 신탁등기가 병행되는 것에 한한다)으로 인한 신탁재산의 취득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취득. 다만, 신탁재산의 취득 중 주택조합등과 조합원 간의 부동산 취득 및 주택조합등의 비조합원용 부동산 취득은 제외한다.

<개정사유>

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용으로 신탁해지를 통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비과세 하지 아니하나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신탁해지로 취득하는 경우 비과세하고 있으므로 수익사업용 부동산에 해당됨에도 비과세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불합리하기 때문에 과세하도록 개선한 것이다.

<적용례>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지방세법 제105조제10항 및 제110조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하도록 한다. 따라서 개정된 이법 시행일 이후 일반분양분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비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므로 그 취득시기는 당초 주택조합이 신탁당시의 취득시점이 아니라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의 경우 사용검사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소유권이전고시일 익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3) 주택조합용 토지의 취득시기(영 제73조)

현 행	개 정
〈신설〉	⑤ 「주택법」 제32조에 따른 주택조합이 주택건설 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를 받은 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보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주택재건축조합이 주택재건축사업을 하면서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않은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2조제2항에 따른 소유권 이전 고시일의 다음날에 그 토지를 취득한 것으로 본다.

<개정사유>

현행 지방세법 시행령 제74조에 주택조합 및 주택재건축조합과 관련한 건축물의 취득의 시기에 관하여 주택조합 신축주택은 사용검사일, 주택재건축조합 신축주택은 소유권이전공고일 익일로 규정되어 있으나 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를 취득하는 시점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 주택조합의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종전 취득시기 비교

- 심사결정 및 유권해석('06.6.12 이전) : 신탁등기 종료일
 - 법제처 법령해석('06.6.12 이후) : 준공인가일
 - 법원판례 : 사용검사일, 대지권 등기일, 신탁등기 종료일, 준공인가일
- (각 사건마다 판결 내용이 상이)

<적용례>

비조합원용 토지에 대한 취득시기를 토지에 대한 조합원 지분과 조합지분이 확정되는 시점으로 구분하여야 하는 바 주택재건축조합의 경우 준공인가 후 이전고시가 된 때 대지 확정측량 및 대지권분할 절차를 거쳐 각종 권리가 확정되므로 소유권이전 고시일의 익일로 규정하고 주택조합은 주택법 제29조에 의해 사용검사 시점에 토지의 대지권이 확정되어 조합과 조합원의 지분을 구분할 수 있으므로 사용승인서 교부일로 규정을 취득일로 명문으로 규정한 것이므로 그 이전이 임시사용승인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를 취득일로 볼 수가 없다.

토지취득 신탁등기 임시사용일 사용승인서교부일 신탁해제

↑

취득일 판단

현행	개정
⑤다음에 계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⑤다음에 계기하는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에 의한다.

개인사업자와의 형평성 차원에서 법인세법 적용을 받는 법인도 특수관계자와의 부당행위시 사실상의 취득가격 인정하지 아니하기 위함이다. 여기서 특수관계자는 임원의 임명권 등 당해 사업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자 및 그 친족, 주주 등 이 이에 해당하는 것이다.

법인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특수관계자와의 거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부인에 적용을 받게 되어 비록 장부상 취득가격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이를 사실상의 과세표준으로 적용하였으나 아니되는 것이다.

32 | Korea Local Finance Association

(5) 고급주택 및 고급오락장의 상속 취득시 신고기간 연장(법 제112조)

현 행	개 정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3. 고급주택 :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 다만, 주거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주거용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주택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에 착공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고급오락장 : 도박장·유흥주점영업장·특수목욕장 기타 이와 유사한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부속토지). 다만,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을 취득한 날부터 3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개시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부터 각각 6개월(납세자가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각각 9개월)]이내에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거나 고급오락장이 아닌 용도로 사용하기 위하여 용도변경공사를 착공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사유>

매매 등의 일반 취득이 아닌 상속·실종 등에 의한 취득의 경우에는 6개월(외국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 타 용도로 전환시 중과세를 배제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는 일반 취득의 경우 신고납부기간은 취득일로부터 30일이내인데 비하여 고급주택 등이라고 하여 상속등으로 취득하는 경우 30일로 신고납부하도록 하는 것은 과세형평상 무리라고 할 것이다.

<적용례>

시행일: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6) 지방세 과세표준심의위원회의 심의절차 폐지(영 제80조)

현 행	개 정
〈신설〉	⑧ 행정안전부장관이 제3항 본문에 따라 기준을 정하거나 같은 항 단서에 따라 승인을 하거나 제5항에 따라 조정기준을 정할 때에는 미리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80조의4에 따른 기준이나 제81조에 따른 기준을 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사유>

정부의 각종 위원회 정비계획의 일환으로 행정안전부내 위원회는 ‘정부위원회 정비지침’(’08. 5월)에 의거 폐지하고, 필요시 관계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도록 하는 규정 개정한 것이다.

현 행	개 정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u>행정안전부</u> 및 <u>지방자치단체</u> 에 둔다. ②(생략) ③ <u>행정안전부</u> 및 <u>지방자치단체</u>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행정안전부령</u> 에 <u>설치하는 위원회</u> 의 경우에는 <u>행정안전부령</u> 으로, <u>지방자치단체</u> 에 <u>설치하는 위원회</u> 의 경우에는 <u>조례</u> 로 정한다.	제81조의2(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 ①법 제111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세과세표준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는 <u>지방자치단체</u> 에 둔다. ② (현행과 같음) ③ <u>지방자치단체</u>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출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④이 영에서 정한 사항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u>조례</u> 로 정한다.

(7) 유흥주점의 범위 명확화 (영 제84조의3)

현 행	개 정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물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④법 제112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서 고급오락장으로 보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에 사용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고급오락장이 건축물의 일부에 시설된 경우에는 당해 건축물에 부속된 토지중 그 건축의 연면적에 대한 고급오락장용 건축물의 연면적의 비율에 해당하는 토지를 고급오락장의 부속토지로 본다.

현 행	개 정
5.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u>영업장소</u>.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u>무도유흥주점(카바레·나이트클럽·디스코클럽 등) 영업장소(영업장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u> 나.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으로서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축된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한다)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u>영업장소</u>. 다만, <u>영업장의 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한다)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에 한한다.</u>	5. 「식품위생법」 제22조에 따른 허가 대상인 유흥주점영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장소중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관광유흥음식점(관광극장식당업의 경우에는 관광호텔안에 있는 것으로서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받은 것에 한한다)을 제외한 <u>영업장소(공용면적을 포함한 영업장의 면적이 100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것만 해당한다)</u>. 이 경우 「식품위생법」에 의한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광진흥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때에는 유흥주점영업 허가를 받은 날에 관광유흥음식점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가. 손님이 춤을 출 수 있도록 객석과 구분된 무도장을 설치한 <u>영업장소(카바레, 나이트클럽, 디스코클럽 등)</u> 나.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축된 객실의 면적이 <u>영업장 전용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의 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룸살롱, 요정영업 등)</u>

<개정사유>

무도유흥주점의 영업장 면적에 공용면적을 포함토록 명문화하고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범위 중 카바레·나이트클럽·룸살롱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한 것이다.

<적용례>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대한 취득세 중과세 적용 문제에 대하여 보면 종전에는 유흥접객원(상시 고용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한다)으로 하여금 유흥을 돋우는 유흥종사자를 두는 것을 고급오락장이 룸살롱 및 요정영업의 중요한 요건으로 하고 있으나 현행 개정 규정에서는 이를 별도로 두지 아니하고 있어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를 적용할 경우 유흥접객원의 요소는 중과세 적용의 주요 요소가 아닌 참고 사항에 해당 할 것이다.

그러나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에 대한 취득세 등 중과세 적용시 유흥주점 영업은 기본적으로 유흥접객원으로 하여금 손님 of 유흥을 돋우는 영업행위가 주로 행하여지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유흥접객원을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의 요소를 하지 아니하고 단순히 물적설비(객실수 5개 이상 등)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에는 룸살롱 및 요정영업장소가 아닌 이와 유사한 형태의 영업장소(노래방 등)에 대하여도 중과세 적용되는 문제가 발생하는 소지가 있는 것이다.

- 유흥주점영업 형태
- 별도의 반영구적으로 구축된 객실구비(시설기준)
- 객실면적이 영업장면적(전용면적에 한함)의 100분의 50 이상이거나 객실수가 5개 이상인 영업장소
- 영업장면적(공용면적을 포함함) : 100㎡ 초과

유흥주점으로서 영업허가를 반드시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인허가 업종에 불구하고 영업장소의 「현황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다. 건물을 취득할 당시 룸살롱시설이 모두 철거되고 영업을 재개할 현황이 아닌 경우에는 비록 영업허가가 존속하고 있더라도 고급오락장을 취득하였다고 할 수 없어서 취득세 중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다(대법원 92누930 참조). 그리고 룸살롱의 영업장소는 일단의 손님들이 그밖의 손님과 격리된 장소에서 유흥을 즐길 수 있도록 객실이 설치된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실제로 유흥종사자를 두고 있는지 여부는 룸살롱 영업장소 여부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대법원 97누7851, 1997.12.12. 참조) 판시한 바가 있다. 따라서 룸살롱의 경우 종전에는 「설비요건+인적 운영요건」을 결합하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인적 운영요건인 유흥접객원의 존재 여부가 중요한 요건이 되는 것이나 현행 규정에서는 중과세 대상인 고급오락장의 범위 중 카바레·나이트클럽·룸살롱 등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았거나 받아야하는 것으로 정의함으로써 설비요건을 중요시 하고 중과세 적용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8) 고급주택의 요건 명확화 (영 제84조의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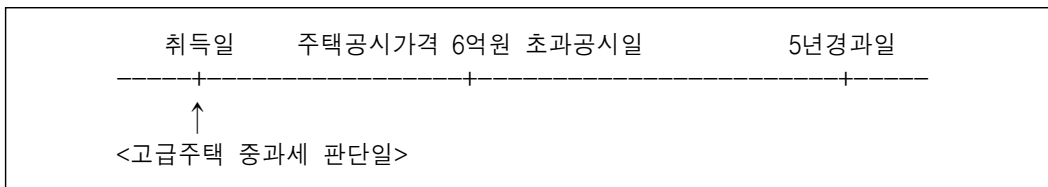
현 행	개 정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u>시가표준액</u>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법 제112조제2항제3호에 따라 고급주택으로 보는 “주거용 건축물 또는 그 부속토지의 면적과 가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거나 당해 건축물에 67제곱미터이상의 풀장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대시설을 설치한 주거용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다만, 제1호·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주택은 법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u>취득 당시의 시가표준액</u> 이 6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사유>

주택을 취득할 당시 물적 설비 등 요소가 고급주택의 요건(건물 연면적 등)에는 해당되나, 시가표준액 6억원 미만으로 과세대상이 되지 않은 주택이 5년이내에 건축물의 증·개축 등이 없음에도 시가표준액 상승(6억원 초과)으로 고급주택이 되어 중과세를 추징하여야 하는지 여부에 대한 문제를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적용례>

지방세법 제112조의2제1항에 의거 취득세 5배 중과를 적용하여 추징하여야 한다는 해석이 가능하나 이는 고급주택에 대한 중과세 적용 요건으로 신증축 등으로 중과세 되는 것이라면 문제가 없으나 단순히 시가변동으로 5년이내 시가표준액이 6억원을 초과한 경우에 추징하는 것은 취득행위가 별도로 없음에도 불구하고 중과세 적용하는 문제가 발생됨으로 시가표준액 상승으로 중과대상이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급주택을 판단하기 위한 시가표준액 적용 기준일을 추징하더라도 취득당시의 시가표준액으로 적용하여 중과세 적용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3. 등록세

(1) 농지 범위 (영 제89조)

현 행	개 정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라 함은 등기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 또는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의 토지현상이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식물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②법 제131조제1항에서 “농지”란 다음 각 호의 토지를 말한다. 1.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전·답 또는 과수원인 토지로서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식물의 재배지로 이용되는 토지를 말한다. 이 경우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한다. 2. 등기 당시 공부상 지목이 목장용지인 토지로서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 초지 및 사료밭을 말한다.

<개정사유>

등록세의 경우 부동산 등기시 농지여부에 따라 등록세 세율이 차이가 발생되므로 농지인 전·답·과수원과 목장용지에 대한 범위를 소득세법 및 법인세법에서 규정한 농지의 정의 및 범위와 동일하게 정리 한 것이다.

<적용례>

종전에는 실제 농작물의 경작이나 다년생 식물 재배지인 경우에 한정하여 농지(전,답,과수원)로 보았으나 농지 경영에 직접 필요한 농막(農幕)·두엄간·양수장·지소(池沼)·농도(農道)·수로 등이 차지하는 토지 부분을 포함하고, 목장용지인 경우에는 초지, 사료밭 등 가축 사육에 직접 공여되는 목장용지에 한정하였으나 실제 축산용으로 사용되는 축사와 그 부대시설로 사용되는 토지를 포함한다.

따라서 농지매매를 통하여 취득하는 경우 이에 대한 부동산 등기시 적용 세율은 1000분의 10에 해당하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는 것이다.

4. 면허세

(1) 정기분 및 수시분 면허세 납세의무의 명확화(법 제161조)

현 행	개 정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①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와 건축허가 기타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61조 (납세의무자 등) ① 제16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각종의 면허를 받는 자(변경면허를 받는 자를 포함한다)는 그 면허의 종류마다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하여져 있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에 그 면허가 갱신된 것으로 보아 매년 그 면허세를 부과하고, 면허의 유효기간이 1년 이하인 면허에 대하여는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에 대하여는 제2항에도 불구하고 면허를 할 때 1회에 한정하여 면허세를 부과한다. 1.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2. 건축허가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면허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

<개정사유>

서비스업 등 다른 업종과는 달리 제조업·가공업·수입업의 경우, 업종별 면허세는 물론 생산되는 품목에 대하여도 품목별 면허세를 납부(수시분 : 면허 받을시 납부, 정기분 : 매년 1월 납부)하고 있어 품목별로 부과하는 면허세는 면허당시 1회에 한해서수시분 면허세로만 납부하고 품목별로 매년 1월의 정기분 면허세(5종)로 과세되는 경우에는 폐지하되 당해 제조업 등 면허업종에 대한 정기 면허세로만 과세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례>

의약품 제조업을 영위하면서 품목별로 면허(아스피린 제조 등)를 받는 경우 의약품제조업면허에 한정하여 정기분으로만 면허세를 과세하는 것이며, 이는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2009년도 정기분 면허세부터 품목별면허에 대한 과세분은 폐지하여야 한다.

(2) 품목별 면허의 폐지 (영 제124조)

현 행	개 정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 (생 략) ②법 제161조제3항에서 “ <u>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u> ”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 32. (생 략) 33. 건축·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또는 공작물의 설치 허가 <u>〈신 설〉</u> ③제1항의 면허중 제조업·가공업 또는 수입업의 면허로서 품목별로 면허를 하는 행정처분에 대하여는 이를 각각 별개의 면허로 보아 제1항의 종별 구분에 불구하고 품목마다 제5종에 해당하는 면허세를 부과한다.	제124조(면허의 종류와 종별 구분 등) ①(현행과 같음) ②법 제161조제3항제2호에서 “ <u>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허</u> ”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 32. (현행과 같음) 33. 건축, 대수선 34. 공작물의 설치 허가 <u>〈삭 제〉</u>

<개정사유>

“건축·대수선의 경우에는 설계변경 등으로 증가된 분에 한한다”라는 규정에 대한 해석상의 혼선을 초래하여 지방세법시행령 제126조의2 규정에 의거 면허를 받은 자가 변경되는 경우에도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함에도, 건축·대수선의 경우에는 면적이 증가된 경우에만 면허세를

납부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충돌하는 문제가 있으므로 ‘건축·대수선’ 면허의 괄호 중 “증가된 부분에 한한다”를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하도록 개정한 것이다.

또한 제조업·가공업 등의 품목별 면허세는 정기분 면허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삭제한 것이다.

(3) 총포영치기간중 반환 받는 경우 면허세 과세 전환 (법 제126조의2)

현 행	개 정
제126조의2(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법 제163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허”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면허를 말한다. 1. 2. (생 략)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단서 신설> 4. ~ 9. (생 략)	제126조의2(용도구분 등에 의한 비과세) ----- ----- ----- ----- 1. 2. (현행과 같음) 3.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 제47조제2항에 따라 총포 또는 총포의 부품이 보관된 경우 해당 총포의 소지 면허, 다만, 동일한 과세기간 중에 반환받은 기간이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 9.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영치되어 보관중인 총포소지면허에 대하여 정기분 면허세를 비과세 하였으나 반환받은 경우에는 과세토록 법제처 유권해석이 있음에 따라 이를 과세하도록 전환한 것이다.

<적용례>

매년 보관중인 총포에 대한 소지면허에 대하여 비과세 하였으나 1년이내에 반환 받은 경우에는 추징하여야 하는 것이다.

4. 주민세

(1)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의 적용 범위 및 통보기한(법 제177조의4)

현 행	개 정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및 제115조의 규정에 의한	②세무서장이 「국세기본법」 또는 「소득세법」에 의한 경정·결정 등에 따라 부과지방법에 의하여 소득세(「소득세법」 제81조, 제115조, 「국세기본법」

현 행	개 정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달 말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제47조, 제47조의2부터 제47조의5까지, 제48조 및 제49조에 따른 가산세를 포함한다)를 징수하는 경우 그 소득세할은 제177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득세부과의 예에 따라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와 함께 부과지한다. ④세무서장이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받거나 부과지한 소득세할의 과세표준이 된 소득세를 환급한 경우에는 그 다음 달 15일까지 행정안전부령이 정하는 서식에 의하여 소득세의 납세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에게 그 내역을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는 당해 소득세할을 환부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소득세 및 국세기본법에 의거 결정, 결정되는 경우 국세기본법에 의거 부과되는 각종 가산세와 소득세법에 의거 부과되는 각종 가산세를 주민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도록 이를 명확히 한 것이다.

<적용례>

소득세 가산세의 부과근거가 국세기본법이나 소득세법에 의거 발생하는 경우 그 가산세는 본세인 소득세에 포함되며 이는 당연히 소득세할 주민세의 과세표준에 포함되기 때문에 2009년 1월 1일 발생분부터 적용한다.

5. 재산세

(1) 재산세 과세표준 적용방법의 명확화(법 제187조)

현 행	개 정
제187조(과세표준) ①토지·건축물·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②선박·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제187조(과세표준)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1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2. 건축물·선박 및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제111조제2항제2호에 따른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개정사유>

토지 및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과세표준의 적용 근거가 취득세의 과표산정기준을 인용함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111조 제2항의 규정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제1호의 규정인지 아니면 제2호의 규정인지 여부가 불명확함에 따라 정확한 인용 규정을 마련하여 적용 하도록 하기 위하여 개정한 것이다.

따라서 건축물 과표산정기준은 지방세법 제11조 제2항 제2의 규정을 적용하여 산출되도록 하고 토지와 주택의 경우에는 동법 동조 동항 제1호의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확히 한 것이다.

<적용례>

이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부칙 제1조)

(2) 세부담상한제 조정(법 제195조의2)

현 행	개 정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주택공시가격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95조의2(세부담의 상한)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계산한 직전연도의 당해 재산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5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다만, 제111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의 <u>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u>이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의한 금액을 당해연도에 징수할 세액으로 한다. 1.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0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05에 해당하는 금액 2.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가액이 3억원 초과 6억원 이하인 주택의 경우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산출세액이 직전연도의 당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액 상당액의 100분의 11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사유>

기존주택에 대하여는 매년 1월 1일 기준으로 결정·고시된(4.30)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1.1이후~5.31 기간중 신·증축된 주택은 건물시가표준액에 토지공시지가를 합산한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함으로써 과세표준을 달리적용하고 있는바, 이는 기존주택은 개별주택가격, 신·증축 주택은 토지가격이 반영되지 않은 가격(건물시가표준액)으로 하는 취득세 규정을 재산세에 적용함으로써 과세불형평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신·증축을 포함한 주택에 대하여 주택공시가격 또는 시장·군수가 산정한 주택가격을 마련하여 적용하도록 한 것이다. 또한 매년 1월 1일 이후에 신축이나 증축됨으로서 개별주택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세 부담 상한비율이 적용되는 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은 시장·군수 산정가격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적용례>

주택공시가격이 없는 주택에 대하여 주택가격을 산정하는 것은 표준주택가격을 기준으로 국토해양부 장관이 제공하는 주택가격비준표를 적용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개별주택의 경우 표준주택가격과 이와 유사한 주택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여야 하고 이를 근거로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여야 하는 것이다.

(3) 별도합산과세대상 범위 명확화 (영 제131조의2)

현 행	개 정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생략) ③법 제182조제1항제2호 본문에서 “별도합산과세하여야 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토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1. ~ 7. (생략) 8.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안의 토지로서 동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통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 17. (생략)	제131조의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의 범위)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 ----- 1. ~ 7. (현행과 같음) 8.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 안의 토지로서 같은 법 제2조제7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물류단지시설용 토지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5호의 규정에 의한 공동집배송센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식경제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토지 9. ~ 17. (현행과 같음)

<개정사유>

법명의 개정에 따른 조문 개정

(4) 자유경제구역내 사업자의 분리과세 (영 제132조)

현 행	개 정
24. 「도시개발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공여하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 다만,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토지의 공급계획에 따라 공급이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동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완료공고를 할 때까지 도시개발사업에 공여되고 있는 주택건설용 및 산업단지조성용 토지에 한한다.	24.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가 그 도시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경제자유구역사업의 시행자가 그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에 제공하는 토지(주택건설용 토지와 산업단지용 토지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기간 동안만 해당한다. 가. 도시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고시한 날부터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공사 완료 공고가 날 때까지 나. 경제자유구역개발 실시계획 승인을 고시한 날부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으로 조성된 토지가 공급 완료(매수자의 취득일을 말한다)되거나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준공검사를 받을 때까지

<개정사유>

도시개발법 제11조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에 대해서는 재산세 분리과세를 명문화(시행령 §132⑤24) 하고 있으나 도시개발사업용 토지와 유사함에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에 대하여는 지방세법령상 과세구분을 명확히 하지 않아 경제자유구역개발사업의 경우, 주택건설사업용 및 산업단지용 토지의 경우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개발사업자로 지정된 것으로 유권해석(세정-517호, '08.2.5)에 따라 분리과세 적용토록 개정한 것이다.

(5) 전기통신공사용 토지의 분리과세 범위 확대(영 제132조)

현 행	개 정
28. 「무역거래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28. 「전시산업발전법 시행령」 제3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무역전시장으로 사용되는 토지
29. (생략) 〈신설〉	29. (현행과 같음) 30. 「전기통신사업법」 제5조에 따른 기간통신사업자가 기간통신역무에 제공하는 전기통신설비(「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를 말한다)를 설치·보존하기 위하여 직접 사용하는 토지(대통령령 제10492호 한국전기통신공사법시행령 부칙 제5조에 따라 한국전기통신공사가 1983년 12월 31일 이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마친 것만 해당한다)

<개정사유>

전기통신법에 따라 전기통신회선 설비를 직접 설치하고 법률에서 정한 국민생활에 필요한 보편적(공중전화·도서통신·응급전화 등) 전기통신서비스를 제공하는 일부 공기업적 기능을 수행하는 기간통신사업자용 토지에 대해 분리과세 적용하도록 하되, 전기통신사업용 전체 보유 토지 중 국가현물출자분과 일반 취득분이 혼재되어 있으므로 전기통신사업자가 법인설립 당시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대상으로 분리과세로 전환하고 구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시행령(부칙 제5조)에 따라 현물출자후 2년이내(1983.12.31)까지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한 사업용 토지에 한정하도록 한 것이다.

5. 자동차세

(1) 자동차세의 이전등록시 납세증명서 제시 (법 제196조의13)

현 행	개 정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변경등록(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등록에 한한다) 또는 동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변	제196조의13 (납세증명서등의 제시) 「자동차관리법」 제12조에 따른 이전등록을 받고자 하는 자와 「건설기계관리법」 제5조에 따른 변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만 해당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

현 행	개 정
경신고(건설기계의 소유권 이전으로 인한 변경신고와 시·도를 달리하는 사용본거지의 변경신고에 한한다)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당해 등록관청에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하거나 내보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자동차세의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사유>

시·도간 자동차 주소지 변경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을 제출하도록 하였으나 '04.1월부터 전국번호판을 사용하도록 시행됨에 따라 전입신고만으로 자동차 주소지변경등록이 가능하므로 자동차세 납부 영수증 제출규정을 삭제하도록 한 것이다.

<적용례>

2009년 1월 1일부터 시·도간 자동차 주소지 변경시에는 자동차세영수증등 자동차세를 납부한 증명서를 제출의무를 삭제하고 자동차나 건설기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에만 제출토록 개선한 것이다.

(2) 체납자동차에 대한 자동차번호판 영치 (영 제146조의12)

현 행	개 정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등록증을 회수함과 동시에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②(생략)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함과 동시에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고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46조의12(자동차등록증의 회수 등) ①시장·군수는 납세의무자가 독촉기간내에 체납된 자동차세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여야 한다. ②(현행과 같음) ③도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시장·군수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자동차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교부한 자동차등록증을 지체없이 회수하고, 자동차 등록번호판을 영치하며, 그 결과를 시장·군수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사유>

자동차세가 체납된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함과 동시에 자동차등록증 회수는 행정절차상 준수하기 어려우며 실효성이 없으므로 체납된 차량에 대하여는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하지 아니하고, 이미 자동차 등록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선택적으로 등록증을 회수하거나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도록 개선한 것이다.

6. 담배소비세

(1) 담배소비세 납세지 조정(법 제227조)

현 행	개 정
〈신설〉	④제225조제5항의 경우 담배소비세의 납세지는 같은 항에 따른 처분을 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하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으로 한다.

<개정사유>

면세용 담배를 반출한 후,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 담배소비세가 추징하게 되는데, 이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가 불분명한 문제점이 있어서 당해 담배물품을 처분한 자의 영업장 소재지 관할 자치단체를 납세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이다.

<적용례>

2009년 1월 1일부터 당해 용도에 사용하지 않아 담배소비세를 추징하는 경우 영업장소재지 시군이 납세지가 되나 그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한 장소를 관할하는 시군을 납세지로 정한 것이다. 예를 들면, 서울소재 면세점에서 면세용 담배를 인천에서 불법 판매하였을 경우 담배소비세 납세지는 서울이 되는 것이다.

7. 공동시설세

(1) 공동시설세 과세표준(법 제240조)

현 행	개 정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	②제1항의 토지·건축물 및 선박은 제180조제1호 내지 제4호의 규정에 의한 토지·건축물 및 선박으

현 행	개 정
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의 규정에 의한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로 하며, 그 과세표준액은 제187조에 따른 가액 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다만, 주택의 건축물 부분에 대한 과세표준액은 제111조제2항제2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산정한 가액에 제1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적용비율을 곱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개정사유>

공동시설세의 과세표준은 재산세의 과세표준을 인용하여 적용하고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규정을 개정한 것이다.

8. 감면

(1) 경형 승합차량에 대한 감면 확대(법 제268조의2)

현 행	개 정
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자동차관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승합자동차 또는 화물자동차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개정사유>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위하여 배기량 1,000cc 미만의 경형 승합·화물차(대상 : 다마스, 라보)에 대한 취·등록세 감면범위를 확대하도록 감면 규모를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감면토록 한 것이다.

※ 경형 승용차(티코, 마티즈)는 '04년부터 취·등록세 면제

<적용례>

2009년 1월 1일부터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차량에 대하여 감면 토록하고 2008년도 말에 취득하였으나 2009년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라면 취득세는 50%감면 적용되나 등록세는 전액 면제 되는 것이다.

(2) 하이브리드 차량의 감면(법 제268조3)

현 행	개 정
〈신설〉	제268조의3(하이브리드자동차에 대한 감면)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하이브리드자동차로서 같은 조 제2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자동차를 취득하여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한다. 1. 취득세액이 40만원 이하이고 등록세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는 취득세 및 등록세를 전액 면제한다. 2. 취득세액이 40만원을 초과하고 등록세액이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산출한 세액에서 취득세 40만원 및 등록세 100만원을 각각 공제한다.

<개정사유>

친환경자동차산업 육성 및 에너지 절약을 위해 하이브리드차를 취득하는 경우 취득세는 40만원, 등록세는 100만원까지 감면토록 세제지원을 한 것이다.

<적용례>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 감면은 2009년 7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거나 등록하는 차량에 한정하여 적용하기 때문에 2009년 6월에 취득하고 2009년 7월 이후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취득세는 감면혜택이 없으나 등록세는 감면혜택이 부여되는 것이다.

예시 H회사 하이브리드 차량에 대한 취득가액이 2500만원인 경우로서 산출 세액이 취득세 50만원, 등록세 125만원인 경우 감면액과 실제 납부할 세액은

- 취득세 감면세액 : 40만원, 납부세액 10만원
- 등록세 감면세액 : 100만원, 납부세액 25만원

(3) 관광단지개발 등에 대한 감면확대(법 제277조)

현 행	개 정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u>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u>경감된</u>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① 「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개발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u>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u>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관광단지개발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u>면제된</u>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사유>

관광단지개발 사업시행자가 관광단지 개발을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와 등록세의 감면 범위를 확대하여 50% 감면에서 전액 면제토록 한 것이다.

<적용례>

관광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대한 감면시한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감면을 적용하기 때문에 취득일과 등기일이 감면 적용시한 내에 이루어져야 감면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다.

(3) 관광호텔업에 대한 감면(법 제277조의2)

현 행	개 정
<신설>	제277조의2(관광호텔 등에 대한 감면) ①「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호텔업을 경영하는 자가 외국인투숙객 비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과세기준일 현재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제182조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대하여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호텔업을 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호텔업용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세 및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12조제3항 및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법인등기(설립 후 5년 이내에 자본 또는 출자액을 증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등록세를 과세할 때에는 제138조제1항의 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3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호텔업의 용도로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호텔업의 용도로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부분에 대하여는 경감된 취득세 및 등록세를 추징한다.

<개정사유>

외국인 관광객 유치 및 외화 획득을 위하여 관광호텔용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50% 감면하고 취득세와 등록세를 종과세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하며, 그 범위를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투숙객중 외국인 비율이 30%이상인 관광호텔에 한정하여 감면토록 한 것이다.

<적용례>

관광호텔용 부동산에 대한 재산세 50% 감면과 취득세와 등록세 중과세배제는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4) 외국인전용호텔에 대한 감면요건(영 제224조의3)

현 행	개 정
<신 설>	제224조의3(외국인투숙객비율 등의 범위) 법 제277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신고된 직전연도 숙박용역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 중에서 같은 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제5호의3에 따른 외국인 관광객에게 공급한 숙박용역의 공급가액(객실요금만 해당한다)이 차지하는 비중이 수도권지역은 100분의 30 이상, 수도권이 아닌 지역은 100분의 20 이상일 것 2. 외국인 관광객에게 조례로 정하는 객실요금 인하율에 따라 숙박용역을 제공할 것(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조례로 그 인하율을 정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개정사유>

외국인 투숙객 비율은 서울시 감면조례 내용을 포함할 수 있는 30%이상으로 하되 이 경우 수도권 140개(72%), 비수도권 117개(35%)로 지역간 편차가 다소 있으나,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경우 외국인투숙비율이 차이가 있으므로 수도권은 30% 이상, 비수도권은 20%이상으로 차등을 두고 감면하되, 객실요금 인하비율은 지방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하였는바, 이는 객실요금은 고시가격이 아니라, 사업자가 정하는 임의가격으로 지역별로 편차가 너무 심할 뿐만 아니라 여행사 등을 통한 예약시에는 표시가격과 판매가격이 달라지는 등 법령에서 일률적으로 기준가격을 정할 수 없으므로 해당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것이다. 08년 현재 서울특별시가 세계 20대 관광도시 도약을 핵심시책으로 추진하면서 관광호텔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을 유일하게 시행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외국인 투숙객 비율 30% 이상, 객실요금 인하비율 특급20%, 기타 10% 적용하고 있으며, 객실요금 인하율에 대한 확인은 서

울시는 표시가격과 기준가격을 통한 객실요금 인하여부를 한국관광호텔업협회 및 관광 관련 부서의 확인을 통해 판단하고 있는 실정이다.

(5) 산재의료관리원의 감면 대상 명확화(법 제278조 제3항)

현 행	개 정
2.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재단법인 산재의료관리원이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의료사업 및 재활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 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적용례>

개정된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6) 물류단지내 감면 명확화(법 제111조)

현 행	개 정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유통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유통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유통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⑤대통령령이 정하는 물류단지내에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등록세 및 재산세를 감면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면제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물류단지개발사업시행자가 물류단지를 개발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2. 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물류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그 부동산을 취득한 날부터 5년간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적용례>

개정된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7) 한국자원재생공사 감면 명확화(법 제286조)

현 행	개 정
②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동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7조제4호 내지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② 「한국환경자원공사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환경자원공사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임대용 부동산을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득세와 등록세를 감면하고, 과세기준일 현재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다만, 그 취득일부터 1년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 부분에 대하여는 감면된 취득세와 등록세를 추징한다. 1.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 2. 「한국환경자원공사법」 제11조제1항제5호 및 제9호부터 제11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업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

<적용례>

개정된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8) 인구보건복지협회 용어 변경(법 제287조)

현 행	개 정
1. 「모자보건법」에 의한 대한가족보건복지협회	1. 「모자보건법」에 따른 인구보건복지협회

<적용례>

개정된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9) 주택공사의 공급용 토지의 감면 명확화(영 제225조)

현 행	개 정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생 략)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5호·제6호 및 제8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	제225조(공급목적사업의 범위) 법 제28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1. (현행과 같음) 2. 「대한주택공사법」 제3조제1항제1호·제3호·제4호·제5호 및 제8호(공공기관으로부터 위탁받은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사업

<개정사유>

「대한주택공사법」의 사업 중 취득세·등록세 면제 대상인 공공사업의 범위를 조정하였는바, 대지의 조성·공급(동법 제3조제1항제4호)은 추가하고, 주택건설자재의 생산과 공급(동법 제3조제1항제6호)은 제외한 것이다.

(10)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른 조문 변경(법 제226조의2)

현 행	개 정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유통단지”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유통단지를 말한다. ②법 제280조제5항제2호에서 “유통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유통사업용 부동산”이라 함은 「유통단지개발 촉진법」 제2조제2호 각목의 유통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유통단지안에서 최초로 취득하는 토지와 그 토지취득일부터 5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 토지 및 건축물(토지취득일전에 그 사용승인을 얻어 신축한 건축물을 포함하며, 기존 건축물을 취득한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제226조의2(유통단지 및 유통사업의 범위) ① 법 제280조제5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물류단지”라 함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를 말한다. ②-----“물류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이란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7호 각 목의 물류단지시설을 설치하기 위하여 물류단지 안----- ----- ----- -----.

<적용례>

개정된 법은 2009년 1월 1일부터 2009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11) 법인합병의 범위(영 제227조)

현 행	개 정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법 제28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합병”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합병을 말한다. 1. (생 략) 2.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금융위원회 의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간의 합병	제227조(법인합병의 범위) ----- ----- 각 호의 어느 하나-----. 1. (현행과 같음) 2. ----- -----금융위원회----- -----

<개정사유>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99.5.24, 법률 5982호)으로 금융기관의 합병·전환에 대한 인가권이 기획재정부장관(구 재정경제부장관)에서 금융위원회(구 금융감독위원회)로 변경되어 이에 따라 변경한 것이며 법인의 합병으로 인한 법인등기와 양수받는 재산 등기에 대하여 등록세를 면제토록 한 것이다.

[면허세 종별개정 내용]

현 행	개 정
〈제1종〉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u>건설기계 1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u> 27. <u>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u>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104. 의약품·의약외품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104의2. 의리기기의 품목별 수입허가 또는 신고 〈신설〉 166. 마약류를 원료로 한 한외마약 또는 의약품의 제조품목별 허가 172. 유독물의 수출입품목별 신고 〈신설〉 〈신설〉 183. (생략)	〈제1종〉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u>건설기계 20대 이상의 것 또는 종업원 100인 이상의 것</u> 27. <u>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u> 다만, 10층 이상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2,000제곱미터 이상의 건축물에 한한다. 104. 〈삭제〉 104의2. 〈삭제〉 141의2. 먹는 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 및 먹는 해양심층수 수입업 등록 166. 〈삭제〉 172. 〈삭제〉 182. 부동산개발업의 등록 183.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184. (현행 제183호와 같음)

현행	개정
〈제2종〉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112. 분뇨처리시설·오수처리시설·단독정화조 또는 축산폐수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오수처리시설 또는 단독정화조의 제조업 〈제3종〉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2대 이상 5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142.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제작업 143. 음반·비디오물 또는 게임물의 배급업 192. 무역자동화사업자 지정 19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제4종〉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변경허가를 포함하되, 그 증가된 분에 한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9. 축산물의 운반·판매 또는 용기 등 제조업 117의2. 「지적법」에 의한 지적약도 등의 간행·판매업 123. 공인회계사개업 151.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5종〉 14. 토양오염유발시설의 설치 22. 의약품 또는 의약외품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2의 2. 의료기기 제조의 품목별 허가 또는 신고 25. 축산폐수배출시설의 설치 신고 〈신설〉 30. (생략)	〈제2종〉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10대 이상 2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50인 이상 10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다만, 5층 이상 10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 2,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112. 개인하수처리시설 또는 가축분뇨처리시설의 설계·시공업 113. 개인하수처리시설제조업 〈제3종〉 19. 건설기계사업, 다만, 건설기계 5대 이상 10대 미만의 것 또는 종업원 30인 이상 50인 미만의 것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다만, 2층 이상 5층 미만의 건축물 또는 연면적 500제곱미터 이상 1,000제곱미터 미만의 건축물에 한한다. 142.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제작업 143. 음반·음악영상물, 비디오물 또는 게임 배급업 192. 전자무역기반사업자의 지정 194. 토양관련전문기관 지정 및 토양정화업 등록 〈제4종〉 27. 건축 및 대수선(설계변경 등으로 증가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따로 부과한다). 다만, 제1종 내지 제3종에 속하지 아니하는 것 99. 축산물의 운반·판매업 117의2. 「지적법」에 의한 지적편집도 등의 간행·판매업 〈삭제〉 151.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허가 〈제5종〉 14. 토양오염관리대상시설 설치신고 22. 〈삭제〉 22의 2. 〈삭제〉 25. 가축분뇨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30. 제조·가공 또는 수입의 면허로서 각각 그 품목별로 받는 면허 31. (현행 제30호와 같음)